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(법률 제17514호 2020. 10. 20.)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, 0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표 16 제2호 가목 중 교육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(2)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(3) (1), (2)를 제외하고 법 제7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수 정 안	
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·내용·방법 및 시간		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·내용·방법 및 시간	
2. 특별교통안전교육		2. 특별교통안전교육	
가.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		가.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	
교육 과정	교육 대상자	교육 과정	교육 대상자
음주 운전 교육	(1) <u>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</u>	음주 운전 교육	(1) <u>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</u>
배려 운전 교육	(2) <u>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</u>	배려 운전 교육	(2) <u>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</u>
법규 준수 교육 (의무)	(3) <u>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주운전, 보복운전 이외의 원인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</u>	법규 준수 교육 (의무)	(3) <u>(1), (2)를 제외하고 법 제7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02 - 3150 - 0659